

선정 보도

독자 관심 끌려다 ‘나쁜 언론’의 늪에 빠질 수도

서배원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보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적발해 제재한 사례들을 통해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짚어보고 있다. 문제 사례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전국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신문에 실린 기사들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들도 소개한다. 다섯 번째 글은 ‘선정 보도’에 관한 이야기다.

보도의 선정성은 언론의 태생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과 시대를 불문하고 선정적 보도가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것도 그 뿐이다. 다만 시대에 따라 정도와 양태가 다를 뿐이다. ‘독자 관심 끌기’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자의 관심과 시선을 붙잡으려면 기사는 주제, 제목, 표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선정성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모든 언론이 ‘선정성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속성과 마찬가지로 선정성 역시 주체의 노력에 따라 극복될 수도, 빠져들 수도 있다.

선정적 보도 = 나쁜 언론

양심과 윤리의식으로 잘 무장된 언론은 자연스레 선정적 보도와 거리를 두게 된다. 실제로 사회가 언론의 양심과 윤리의식을 큰 목소리로 요구할 때, 대개 사회의 손가락질은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향한다.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매체를 ‘나쁜 언론’과 동일시하곤 한다. 사회의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 언론이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둔갑한 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온라인 시대의 언론은 선정성 유혹에 한층 더 내몰린다. 빠른 시간에 스쳐가는 독자의 시선을 낚아채야 하는 것은 물론 독자가 머무는 시간(DT, Duration Time)을 늘리는 데 사활을 걸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온라인 기사 심의에서 선정적 보도가 전체 심의 대상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이에 비해 종이신문의 선정적 보도는 온라인보다는 그 비율이 낮다. 하지만 발행부수나 영향력이 큰 신문이 주로 심의 대상에 올라 제재를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도의 선정성은 그것을 정의하기조차 쉽지 않다. 선정성을 따지는 관점 역시 다분히 주관적이다. 기사의 주제부터가 선정적일 수도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모든 표현은 선정성을 띠고 있다”는 원론적 주장도 있다. 윤리위원회의 ‘선정성 잣대’는 어찌 보면 ‘최소한’이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여덟 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던 날,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쳤다. ©연합뉴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④(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해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잣대로 선정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윤리위가 선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이다.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유형 1. 여과 없는 ‘범죄의 재구성’

사건 수사 발표나 재판을 중계하는 기사가 ‘선정적 보도’로 심의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범죄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범죄의 재구성’을 하다

보면 잔혹행위 묘사가 지나쳐 지적을 받게 된다. ‘여과’, 즉 지나친 표현을 걸러내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세간을 놀라게 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관련 보도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범죄 과정과 수법 등을 보도한 3개 신문이 선정적 보도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신문은 1심 결심공판 기사를 각각 사회면 톱으로 쓰면서 범인들의 섬뜩한 대화 내용을 여과 없이 전했다. 특히 훼손된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등 잔혹하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썼다.

D일보는 지난해 8월 30일자 A12면 ‘시신 보며

좋아할 때 딸 찾아… 검사, 공범 무기징역 구형하며 울먹’ 기사에서 “손가락과 폐, 허벅지 살을 가져오라고 했다”, “폐와 허벅지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는 등 범인의 진술을 그대로 썼다. C일보는 같은 날 C10면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에 이례적 무기징역 구형’ 기사에서 “폐와 허벅지의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 “새끼손가락을 투명한 약병에 넣었는데 피가 살짝 배어나와 있었고 절단면이 유통불통해 뼈가 드러났다. 허벅지 살엔 지방이 몽글몽글하게 나와 있었다”는 표현 등이 문제가 됐다. H경제 10면 ‘밀실살인·완전범죄…그들의 검색어는 잔혹했다’ 기사 중에는 “8세 여아의 손가락과 폐, 허벅지 살 일부를 들고 지하철을 탔다”, “봉투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확인하고선 예쁘다고 말했다”는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윤리위는 아무리 범인의 직접 진술이라 해도 마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듯 잔인한 범행 수법과 과정을 여과 없이 상세히 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신문과 달리 대부분 신문은 공판 과정을 건조하게 보도하거나, 훼손된 신체부위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등 조심스럽게 기사를 작성해 비교됐다.

● 유형 2. 그릇된 호기심, 흥미 유발

기획 보도나 탐사 보도는 많은 경우 고발, 폭로 등을 다룬다. 기사가 의도하는 부조리, 불합리, 부정의 타파를 위해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걸려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반 기사에서도 대중의 그릇된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A경제의 지난해 5월 14일자 10면 ‘야금야금 마약 오염국<중> ‘작대기 구입 가능한가요’ SNS에 1분 만에 ‘네’’ 기사는 마약 실태를 다룬 기획 보도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보도의 선정성은 그것을 정의하기조차 쉽지 않다. 선정성을 따지는 관점 역시 다분히 주관적이다. 윤리위원회의 ‘선정성 잣대’는 어찌 보면 ‘최소한’이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잣대로 선정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할 수 있다.

”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가 실제 거래를 시도한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선정성이 문제됐다. “인터넷을 뒤져 마약상 찾는 데 1분, 대화 5분이면 사실상 거래가 끝났다. 지난 7일 트위터와 텀블러 등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작대기(주사기)’, ‘얼음(가루)’ 등을 검색하자, 마약상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를 여러 명 발견했다. 필로폰은 크리스탈, 아이스, 차가운 술,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의 은어로도 불린다”고 기술했다. “마약상들은 (중략)

외국 업체의 메신저를 통해서만 대화한다. 보안에 강한 ‘텔레그램’, 중국 메신저 ‘위챗’이 대표적이다.” 마약을 구매하는 구체적인 과정, 마약을 받는 방법도 기술했다. 가격과 마약 대금 입금 방법까지 설명했다. 기사가 의도한 마약 남용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마약 구입에 필요한 은어나 접근 방법 등까지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오히려 독자의 그릇된 흥미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윤리위의 판단이었다.

H일보는 2017년 6월 14일자 10면 ‘연세대서 사제 폭탄 폭발/초보적 수준이지만 대량살상용

제조기법 적용’ 제목의 기사와 그래픽에서 연세대 대학원생이 제1공학관 4층 교수연구실 앞에서 폭발시킨 사제 폭탄의 제조 기법을 상세히 전했다. “AA사이즈 건전지 4개, 전선 등과 함께 커피 텀블러가 발견됐다”, “텀블러 안에는 5mm 길이 나사못 수십 개가 담겨 있었다”, “텀블러 안에 화약물질과 뇌관을 놓고, 뇌관과 전선으로 연결된 외부의 건전지가 기폭장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폭탄 부품 사진과 함께 폭탄 구조도를 그래픽으로 상세히 전했다. 이 정도의 상세한 폭탄 제조 정보는 독자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가 없으며 자칫 모방범죄를 부를 소지마저 있다는 것이 윤리위의 판단이었다. 게다가 관련 사진과 그래픽까지 곁들여 보도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 보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 유형 3. 저속한 표현

기사 중 등장하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폭력 기사를 보도하면서 비속어 등 자극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옮기는 사례 등이 심의에 오른다.

D일보는 지난해 9월 15일자 8면 ‘15세 소녀,

친구 남친과 얘기 나눴다고 10개월 놀림·폭행 당하다가… 목숨 끊은 전주 여중생에 무슨 일이’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숨진 여중생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들은 욕설에 가까운 언어들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기사는 주변 취재를 통해 “남자 꼬실람(꼬시려면) 딴 데로 가라 그래”, “A양을 ‘걸레’라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A양에게 ‘몸 대주고 다닌다’ 등 폭언을 일삼았다” 등 이 여중생이 들었다는 폭언들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C일보는 지난해 11월 8일자 A8면 ‘親文사이트에 ‘九族을 멸할 일’ 저주의 악플’ 제목의 기사로 ‘주의’ 조처를 받았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특정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악플’을 소개한 기사였다. 기사에는 “야 이 X같은 년아. 니 남편 씨X 새끼가 나라를 뒤집어놨어. 이건 구족을 멸할 일이야”, “범죄자 자살한 거 가지고 존X 오바하네”, “더럽게 살다 더럽게 뛰졌다. 잘못을 저지른 주제에 혼자 뛰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X 같은 새끼가 어디 있느냐”, “살아서 X먹을 욕을 죽어서 X먹는 것뿐이다” 등 악플을 그대로 옮겼다. 윤리위는 기사 취지가 일부 네이즈다의 악의적 댓글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고인과 유족에

유럽의 마지막 인종청소, 최후까지 단죄받다



K일보 2017년 11월 23일자 사진. AP 사진을 인용해 보도했지만 독자에게 충격과 쇄魄함,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 욕설이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거의 여과 없이 옮긴 것은 신문의 품위를 해치는 선정적 보도 태도라고 판단했다.

● 유형 4. 사진, 그래픽의 선정성

외신의 경우 사진이나 화제성 기사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례가 문제되곤 한다. 외신을 인용하더라도 독자에게 혐오감과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자극적 내용은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 윤리위의 입장이다. K일보는 2017년 11월 23일자 10면 ‘끔찍한 학살 현장’ 제목의 사진에서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으로 집단 매장된 희생자를 발굴하는 모습을 전했다. AP가 전송한 이 사진에는 뒤엉켜 있는 시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통단 제목 아래 제목과 같은 크기로 사진을 키워 시신 상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독자에게 충격과 섬뜩함,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